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영장 안전점검 실시 근거 마련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71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근거 마련 등	2
※ 참고자료	8
1.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8
2.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13
3.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견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6. 3. 5.

다. 회 부 일: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Ⅲ. 검토의견

□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②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야영장업자에게 야영장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야영장 시설·설비의 보완, 개수·보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이하 “야영장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9. (생략)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의3. ~ 20. (생략) ② ~ ⑦ (생략)	<u>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업자에게 야영장 시설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0조의2제1항에-----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 9의3.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야영장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²⁾은 야영장 안전기준의 하나로 야영장업자가 매월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영장업자의 자체적인 안전점검 외에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또는 개수·보수 요구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철·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통해 야영장 안전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음³⁾.

1)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3) 관련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그런데 야영장은 산악, 계곡, 하천 등 자연 지형에 위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야영장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원인별 현황]

☐ 야영장 사망사고 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질식	자연재해	화재	물놀이	차량사고	가스폭발	기타	총계
25년	7	3	0	1	0	0	0	11
24년	8	0	1	0	0	0	0	9
23년	10	1	1	0	0	0	3	15
22년	14	0	1	0	0	0	1	16
21년	7	0	1	0	0	0	0	8
20년	6	1	0	0	1	0	0	8
총계	52 (77.6%)	5 (7.5%)	4 (6.0%)	1 (1.5%)	1 (1.5%)	0 (0.0%)	4 (6.0%)	67

☐ 야영장 부상사고 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질식	화재	가스폭발	차량사고	자연재해	물놀이	기타	총계
25년	4	6	0	3	1	0	10	24
24년	5	6	7	0	0	0	1	19
23년	5	1	0	1	0	1	1	9
22년	3	7	7	0	0	0	0	17
21년	2	2	4	0	2	0	0	10
20년	5	2	6	5	3	0	0	21
총계	24 (24.0%)	24 (24.0%)	24 (24.0%)	9 (9.0%)	6 (6.0%)	1 (1.0%)	12 (12.0%)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기적인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시설·설비의 보완·개수·보수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의 보완 등 요구의 미이행 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야영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점검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제80조제3항5)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의 위탁 규정에 야영장

4)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의견은 [참고자료 3] 참조

5) 「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 <2018. 3. 13.>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안전점검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야영장 안전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광객 안전 보장을 위해 야영장의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완, 개·보수 요구 규정이 필요하며, ② 야영장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완, 개·보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행정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강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 ~ ⑥ (생략)

※ 참고자료

1.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19. 3. 4.>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

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곱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야영용 자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

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최초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더.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이불·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홀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한다.
- 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홀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한다.

2.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 ☐ (사 업 명)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사업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 ☐ (지원조건/수행주체) 자치단체자본보조·경상보조(정률)

내역사업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공공야영장	40%	60%	-
	민간야영장	40%	30%	30%

*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 사업 가이드라인

o 사업내용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안전)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시설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물처리 시설 △(위생)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야영시설(글램핑 텐트)의 방염천막 교체

*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참고사항

- 실소요액 기반 지원, 기초지자체 야영장 등록 비율 고려, 법령상 제품검사 받은 제품 사용,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 시설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위주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견

지방자치단체명	주요 의견
울산시 울주군	○ 야영장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전기, 가스,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영장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야영장은 전기·가스·소방·구조물 등 복합적 안전요소를 포함하는 시설로서, 분야별 전문성에 기반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점검은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있는 반면,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은 정밀하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이 가능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측면에서 효과적임. ○ 따라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같이 <u>전문기관이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u>
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이나 포천시처럼 야영장이 200~300여개가 되는 지자체에서는 직원 2~3명이 정기적으로 모든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u>도 차원에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u> <u>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함.</u>